

2022. “<라운드테이블: 인권학의 현재와 미래 - 다양한 학문적 접근> 지상중계”
『인권연구』 5(2): 143-187.

2022. “Human Rights Studies: Beyond Disciplinary Approache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2): 143-18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2.5.2.143>

[한국인권학회 2022년 하반기 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인권학의 현재와 미래 - 다양한 학문적 접근> 지상중계

- ▶ 일시: 2022년 11월 26일(금) 10:00-12:00
- ▶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 ▶ 사회: 이주영(한국인권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 ▶ 패널: 전진성(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현재(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서찬석(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운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기록: 이동진

이주영

안녕하세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인권 관련 연구를 하시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네 분께서 각자 자신의 분과학문 안에서 인권에 대한 접근이 어떠한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역사학자이신 전진성 교수님이십니다.

전진성

저는 서양사 전공자입니다. 특히 독일 지성사 전공자고요. 그래서 제 전공과 관련된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국내의 인권 담론이 주로 실정법이

나 국제 정치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개념과 운동적 실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실은 그 말이 밀도 끝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갖는다’ 이진 사실 듣기엔 좋지만, 현실에 대입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기가 힘든데, 예컨대, ‘그럼 난민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하는 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이것은 현실 정치 체제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는 얘기이고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인권 개념은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같은 개념, 즉 말의 본뜻이 민중의 역량을 의미하는 그런 밀도 끝도 없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인권의 규범론적인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역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안을 특수한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그것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차원에서 함께 보는 건데요. 그래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변증법이야말로 역사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권을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야 비로소 인권의 다층적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결코 한마디로 정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권사의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려하는데요. 하나는 미셸린 이샤이의 <인권의 역사: 고대로부터 지구화 시대까지>¹⁾인데, 이진 <세계 인권 사상사>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린 헌트의 <인권의 발명>²⁾인데, 이진 제가 번역했구요. 그 다음으로는 예일대학 교수 새뮤얼 모인이 지은 <마지막 유토피아: 역사 속의 인권>³⁾입니다. 이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1) Micheline Ishay,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국내에도 출간되어 있다.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조효제 역), 도서출판 길 (2005).

2) Lynn Hunt, *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ry*, W. W. Norton (2007). 국내에는 『인권을 발명하다』(전진성 역), 돌베개 (2009).

모인의 책 중엔 <Not Enough>⁴⁾라는 책이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샤이의 세계인권사상사를 보면 이샤이는 정치 사상사 연구자인데 이 분은 인권을 인류 역사에 편재하는 이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존재하는 이념이 시간의 전개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약간 헤겔식 역사철학의 구도를 보여줍니다. 일종의 목적론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붓다, 예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구한 인권의 세계사를 다루고 그것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아주 비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헤겔식 절대정신 같이 상정된 건데 이렇게 되면 인권만의 역사적 특수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건 다 인권이 된다면 그건 인권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서구에서 등장할 때의 특정한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더불어 그것을 넘어서는 역동적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샤이의 접근법에 비하면 미국 역사학자 린 헌트의 저작 『인권의 발명』은 훨씬 역사학적입니다. 이 분은 원래 프랑스 혁명기 정치문화사 연구자고요,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라는 저작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헌트는 인권이라는 관념의 등장을 18세기 서구, 특히 프랑스의 문화사적인 맥락 속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명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권리가 보편적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인권을 보편적이라고 믿게 되었는가라는 역사학적 질문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책의 기본 질문은 대체 어떻게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이 실은 애매한 관념인데도 일반 사람들에게 자명하게 느껴지게 되었는

3) Samuel Moyn, *The Last Utopia: Human Rights in History*, Belknap Press (2010).

4) 새뮤얼 모인, 『충분하지 않다』(김대근 역), 글항아리 (2022).

가, 그리고 그 문화적 맥락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특별히 의롭지도 않았던 생활인들이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계급과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는데 하는 맥락을 밝힌 거고요. 헌트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의 저변에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이라는 의식과 타인에 대한 상상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고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 empathy 간의 변증법을 얘기하면서, 이 변증법을 추동한 주요한 역사적 계기들, 즉 미국독립선언과 프랑스 혁명기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인권이 그야말로 이룩할 수 있는, 즉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헌트의 주장의 핵심은 인권은 ‘허황’되기 때문에 오히려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꼭 자신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층과 성별 등을 뛰어넘어 각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써 그 상상력의 힘에 의해, 불도저 같은, 또는 폭포수 같은 힘에 의해 인권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사이의 관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권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발명된 거죠. 그러나 제가 헌트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건 헌트 역시 이사이처럼 현재의 인권을 오랜 약속의 실현으로 본다는 점, 즉 일종의 목적론적인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인권은 과연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목적론적인 역사의 발전 궤도를 떠나서는 인권을 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인권을 서구의 발명품으로 한정했을 때 인권의 가치는 크게 축소됩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등장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사실상 시민 내지는 국민의 권리였지, 인간 모두의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인권은 오로지 권리를 가질 권리 the right to have rights라는 말입니다. 아렌트의 어조는 다분히 비판적입니다. 권리를 가질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인

권이 없는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렌트는 차라리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무국적자에게는 아예 억압받을 권리조차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이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어 온 인권혁명은 그전의 인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말엽부터 인권은 국가적 단위가 아니라 초국적 단위의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이나 법률가보다는 사회적 주변인, 이방인 혹은 공공적 폭력의 피해자들에 의해 촉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권은 국민국가체제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획기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 제가 볼 때는 새뮤얼 모인의 『마지막 유토피아: 역사 속의 인권』입니다. 모인은 저처럼 지성사, intellectual history 연구자인데, 그의 주장은 최근의 인권은 계몽사상의 산물도 아니고 1940년대 세계인권선언의 산물도 아닌 바로 최근의 정치적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면서 모든 정치적 유토피아가 와해되자 비로소 인권이 인류의 도덕적 유토피아로서 새로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진정으로 마지막 대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권리 개념에 부착되어 있던 국민주권의 봉인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민주공화주의의 역사 혹은 더 좁게는 자유주의의 역사는 인권이 어떻게 태동했는가보다는 어떻게 태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지요. 모인은 유엔 창설과 세계인권선언이 거의 기만이었다고 보면서 그것의 실제적인 목표는 열강들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인권은 소련에 대한 십자군 전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일종의 사산아 신세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 흑인들의 공민권 운동도 사실상 집단의 권리를 강조한 것

이기 때문에 요즘 새롭게 얘기되는 인권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권의 역사는 제도권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자들의 정치사가 아닐까, 그래서 국민의 권리보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찾아가는 역사가 아닐까, 다시 말해 국익, 실정법, 선거, 대의제, 여론 혹은 민심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적이 없는 권리를 생취해가는 과정이야말로 인권의 역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사는 ‘인권의 역사 history of human rights’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본 역사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 본 이사이처럼 인권의 역사를 인권이라는 천부적 원리가 확장되는 과정, 일종의 약속의 실현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역사적이고요. 또한, 인권사가 서구 사상사로 축소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인권사는 인권사의 영역을 넘어 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역사학의 방법론적인 원리에 대해서 재고하도록 만듭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역사학은 사실상 국민국가의 기억과 자기 정체성의 회로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세계사world history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잘난 국민 국가들이 이끌어가면서 나머지 후진국들이 따라가는 식의 역사였다면, 이제 인권사적 관점은 그런 국민 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한 민족사와 세계사의 틀을 벗어난 전혀 다른 역사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이끈다고 봅니다. 요즘 역사학에서도 ‘윤리적 전환ethical turn’이 자주 언급되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 관심사를 말씀 드리면, 인권사의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서구 인권 개념의 지성사, 그걸 이상화하기 위해서 연구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맥락화하기 위해서, 즉 그것을 특정 맥락 속에 있었던 것으로 상대화하기 위해서 서구 인권 개념의 지성사를 연구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엔 역사적 권리입

니다. 인권 유린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바로 과거를 망각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철학자 헤겔은 인도인들에 대해 역사 없는 민족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렇게 역사에서 배제되어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다시 찾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되고요. 이와 더불어 저는 거주의 인권사에 관심 있습니다. 거주라는 것이 삶의 총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거주들을 발굴함을 통해서 거주의 문제를 인권적, 혹은 인간학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도시 인문학연구소에 계신 이현재 교수님께서 사회/여성철학 논쟁과 인권 담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현재

안녕하세요. 사회철학과 여성철학이 인권담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받았을가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큰 얘기를 15분 안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보통은 아닌데요. 첫 번째로, 정의론과 관련해서 인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인권담론을 확장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인식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페미니스트 입장론이라는 게 제기되면서, 전진성 선생님께서 줌전에 말씀하신, 배제된 자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남성중심적 권리담론을 비판하였는지에 대해 좀 짚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계와 돌봄으로의 윤리적 전회라고 부르는 흐름과 인권담론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포스트 휴먼 페미니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 이론가 악셀 호네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악셀 호네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모든 권리와 관련된 저항들이 무시감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때 사람은 무시감을 느끼는데 그 무시감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파서 어디를 맞아서 느끼는 그런 물리적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덕적 자아감의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즉 호네프는 긍정적 자아관계가 훼손되는 것 바로 이게 권리가 훼손되는 것이고 무시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본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호네프는 우리가 보통 권리하면, 법적 인정 혹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인지적 존중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정서 본능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도 있어야 총체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권리 담론만으로, 즉 인지적 담론, 인지적 존중만으로는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이끌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권리 개념에서 조금 더 넓힐 것을 제안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낸시 프레이저인데요. 낸시 프레이저는 정의 패러다임을 잘못된 분배, 문화적 무시, 정치적 대표 불능의 세 가지 관점으로 확장시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전진성 선생님이 얘기하신 난민 문제가 정치적 대표 불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 분배, 문화, 정치적 대표에서 동등한 지위가 고려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참여 동격을 중심으로 권리 담론이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철학의 정의론 분야에서는 권리 담론을 계속 확장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장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미니즘 철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에 인간이 있다라고 보는 근대 패러다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권리담론이 부상이 되었는데

요. 고전적 이상으로서의 맨, 이게 Man, 남성이라는 거죠. 이 맨은 사실 보편성과 객관성의 위치를 담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무위치성을 상정하는 휴머니즘은 실제로 남성들만의 어떤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여성주의 철학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홉스의 사회 교육론에 여성은 주체로 등장하지 않고요. 헤겔한테 여성은 공동체의 영원한 아이러니 정도로 처리됩니다. 프로이트한테도 여성은 페니스가 결핍된 존재 정도이고요. 또, 잘 아시는 콜버그의 정의의 도덕론에서 여성은 그 단계론에 따르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존재로 평가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 담론이라는 것은 사실 사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장론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인식론이 오히려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가령 난자를 수동성으로 정자를 능동성으로 고정시켜 생각했던 18세기 생물학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소위 ‘중립적’ 과학인식론이 난자의 활동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꼬집었죠.

그래서 하딩은 어떤 정의로운 관점 같은 것은 체현된 위치성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현된 위치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저 위에서의 보편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자기가 몸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해러웨이나 하딩은 무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은 없다고 보면서, 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었어요. 그리고 체현된 위치에서 오히려 그 위치에서 객관성을 추구하는 관점이 좀 더 진리에 가까운 관점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인식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피해자 중심주의 같은 정치에 접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딩은 구체적인 여성의 삶에 근거한 연구가 오히려 가장 편견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권력 위계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입장론은 주관적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하딩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객

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장론은 실제로 연구하는 자가 어떤 위치에서 대상을 연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포괄합니다. 소외된 자의 관점, 연구하는 자의 위치에 대한 적극적 성찰을 포함하는 과학은 오히려 더 강한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성의 삶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자만 할 수 있다, 혹은 실체화된 여성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관점의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 관계에서 약자의 측면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 그들의 삶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잘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험이 아니라 관점의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듯이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순들이 교차되는 지점에 여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삶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양한 삶의 맥락을 교차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성만 고려하는 건 여성주의와는 거리가 처음부터 멀니다. 이것이 입장론이죠. 저는 이런 입장론이 배제된 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데 유의하다, 하등이 말하듯이, 이것이 더 객관적인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입장론은 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호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입장론을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특수이익 집단이라는 식으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낙인을 받기도 했구요. 실제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잘못 받아들이면 이기주의와 접합이 되는 지점이 묘하게 있어서 나의 피해가 가장 더 심각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경쟁이 시작되는 이상한 구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휴먼 페미니즘과 돌봄으로의 윤리적 전환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인류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비인간을 고려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과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비인간과의 끊임 없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그 개인을 디폴트로 놓고 어떤 권리 담론을 갖다 전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구요. 존재론적으로 과거의 권리 담론은 독립된 개인을 중심으로 했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리고 ‘인간들뿐 아니라 비인간과의 관계도 존재한다’, ‘비인간도 행위자다’ 이게 신유물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도 관계적 시각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얽혀 있을 때,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고 누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법적인 담론보다는 우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로 관점이 바뀝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처우를 받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 비인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브라이도티는 이러한 것을 윤리적 전회라고 하는데, 윤리적 전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 중심의 권리 담론에서 돌봄의 관계 담론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독일에서 돌봄 혁명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 돌봄 혁명 네트워크에서는 부분 영역으로서의 돌봄 정책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전반에서 인간들 간의 돌봄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간의 돌봄이 주요한 화두로 등장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낸시 프레이저나 해러웨이가 모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해러웨이만 짚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해러웨이는 윤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사는 존재들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이 바로 돌봄이지요. 여기에서는 인지적인 권리 담론보다 돌봄이라는 정서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들의 소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소리를 잘 듣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이것을 해러웨이는 최종적인 윤리적 책임의 방법론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실뜨기string fig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평등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종들이 만드는 돌봄 관계 속에서 연결을 통한 난잡한 돌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권리 담론으로는 비인간과의 관계를 풀기에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만의 권리라는 식으로 권리 경쟁, 피해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점의 전회를 위해서는 아예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는 서찬석 선생님께서 사회학에서의 인권 연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찬석

이 발표에서 저는 사회학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인권에 대한 최근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사회학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인권이라는 주제는 법학이나 역사학, 정치학, 또 철학, 여러 분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인권사회학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학이 어떤 관점인가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힘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학의 정의가 워낙 다양하게 많지만 그렇게 정의한다고 할 때, 인권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천착할 수 있는데 반해 사회학 관점에서는 인권이라는 옳고 그름의 관념이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체화하고 또는 체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의 실질적 투쟁으로서 어떻게 인권 정책이 획득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인권을 둘러싼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인권사회학에서의 접근도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역사학이나 정치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에서 특히 근대 시민사회에서 인권 담론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예전에도 인간이 귀하다는 관념은 전 세계에 많이 편재되어 있었지만, 계급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장애 유무나 여타 다른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인권의 관념은 개인적으로 근대적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린 헌트 역시 근대 사회에서의 발명으로서 인권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평생을 살면서 내집단, 외집단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도시화 속에서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도시에 모이면서 거기서 쌀롱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비로소 ‘일반화된 타자’가 있고 우리가 배경과 상관 없이 타인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관념이 근대 초기에 생긴 것이다, 라고 린 헌트를 위시하여 (인권과 관련해) 근대 초기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언급해 왔습니다.

반면 1945년에 주목하는 학자의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주류적 시각일 수도 있는데 1945년 이전, 즉 2차 대전 이전에 국제연맹 때만 하더라도 ‘주권이 국제법보다 더 중요하다’, 민족자결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관념이 더 강했다면, 독일의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위시하여 2차 대전 중 (인류가) 여러 만행들을 겪은 후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 나오면서 그런 주권보다 국제법으로서의 인권 또는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옮겨지는, 폴 케인

같은 국제법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집중하는 시각이 있고요, 국제기구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 실질적으로 인권이 전면으로 대두되어서 사람들이 인권 아래에서 투쟁하게 된 것은 그 이후라고 해서 1960~70년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민권 운동이 1950~60년대에 거세게 일어났는데, 인종 관련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보이스라는 학자도 유엔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권 담론을 많이 가져오기도 했구요. 말콤 엑스라든지 마틴 루터킹도 인권 관념의 수혜를 받았거나 그러한 관념을 활용한 측면들이 있다고 최근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민주화의 확산 속에서 포르투갈이라든가 남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미 쪽에서도 민주화가 1970~80년대에 많이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민주화되고, 또 90년대에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하면서, 그런 어떤 새로운 민주화의 환경 속에서 바텀업 bottom-up 프로세스로서 인권 정책이 도입되는, 혹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나누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의 톱다운top-down 접근, 그리고 바텀업 접근이 사회학 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톱다운은 기본적으로 신제도주의, 단지 인권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더 광범위한 시각인데요. 에밀 뒤르켐 같은 경우, 사회가 개인의 합이나 아니면 개인의 합 이상의 어떤 것이냐고 할 때 뒤르켐은 후자의 입장이고요. 조직 역시, 또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의 합이 국제사회가 아니라 초국적 수준의 무언가가 있다, 거기서부터 담론도 차용할 수 있다, 인권 역시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에서 초국가적 수준에서 어떤 담론들이 내려와서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는 측면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근데 이 확산 과정이 톱다운이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도입은 하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디커플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호

름이 있고요. 반대로 사회운동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각은 바텀업으로서, 인권 정책이 그렇게 쉽게 유연하게 확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텀업 프로세스로서 계속되는 치열한 투쟁과 쟁의 속에서 실현될 수 있거나 또는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사회 운동에 좀 더 집중하는 바텀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고전 사회학자, 3대 사회학자로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을 꼽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경우에, 다른 학문 분과도 마찬가지로 지지만, 사회학 전체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런 갈등주의, 1960~70년대 갈등주의 이론의 이론적 뿌리가 되기도 했고요, 막스 베버 역시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위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후 젠더, 인종, 계급, 불평등 이론으로도 이어지고 뒤르켐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사회학의 흐름으로도 이어지는데, 이 세 학자들은 사실 인권 자체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의 개념도 이데올로기로서 계급 투쟁 속에서 정치적으로 외피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부르주아들의 위원회처럼 나타난 것이다, 인권 역시 재산권에만 주목하는 부르주아적 관념이라고 보았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더욱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베버 경우에도 근대 사회의 전개 속에서 관료제가 확산되면서 개인이 쇠우리iron cage 속에 갇히는 소외 현상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게 더 옳은 것이고 사회가 인권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놨고요. 뒤르켐 역시 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의 아노미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근대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연대에 인권이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논의는 하지 않았죠. 그냥 사회적 수준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 내에서도 인권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나온 건 굉장히 최근, 2000년대 일이고요. 그 이전에는 국가의 자율성 관련해서 정치사회학이라든가 갈등적 시각에서의 사회운동, 또는 젠더/

계급 불평등, 글로벌 사회학 이론 등이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 사회학 자체는 신생 학문이 되고, 인권이라는 주제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할 때 다른 세부 분과에서의 이론들을 많이 차용하게 됩니다. 마크 프레조 교수님이 쓰시고 조효제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인권사회학 책을, 제가 이번 학기에 인권사회학 대학원 수업도 가르치고 있어서 그 수업에서 주 교재 중 하나로 쓰고 있는데, 또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분이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분이 이 책에서 약간 숙제처럼 남기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학 내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발전 보다는, 인권 커뮤니티 human rights community를 만듦으로써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가, 관료,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인권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면, 이론적 발전 자체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신생 학문으로서, 인권 사회학에 뛰어난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권리 꾸러미 rights bundle라든지,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론에서도 이제 기존의 사회학 방법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통계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그리고 통계와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통합하려는 혼합 방법도 존재하고요, 네트워크 방법론은 앞선 오프닝 발표에서 나왔던 그런 의미 연결망도 보지만 단체 연결망도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 정책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연구도 소개하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다문화 패널리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식의 연구를 했구요. 또,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로 처음 논문이 나온 건데요, 최근에 신광영 교수님 이랑 같이 쓴, ‘정신장애 인권운동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늦게 출몰했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권 운동의 스펠오버(spill-over)로서 여성 운동이 나오고 환경 운동이 나오고 반전 운동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사회 운동들이 분기가 되는데 반해 정신장애 운동은 2010년에서야 나타나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활동가들이 왜 대학 학생운동의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 그런 것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네트워크 방법론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인데, 저희 학과 박사 과정인 정성조 선생님이랑, 지금 석사하고 유학 나가 있는 이희영 선생님이랑, LGBTQ 운동 단체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초동회라고 처음 생긴 사회운동, LGBTQ 사회운동인데요. 사실이 초동회가 1년도 못 가 분열이 됩니다. 레즈비언 단체인 끼리끼리랑 게이 단체인 친구사이로 분열이 되고요. 사실은 생물학적 성이 다른 굉장히 다른 집단이죠. 이후 여러 사회적인 정치적인 억압과 위협 속에서 점차 성소수자라는 동일한 연대 의식을 갖게 되고요. 2000년대, 2010년대 계속 이러면서 연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연대가 진화하여 사회운동공동체social movement community, 이게 사회운동론에서의 용어인데요, 그런 식의 어떤 공동체 레벨로 진화하고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트워크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요. 단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분화된 상태로, 함께 그냥 연대를 서서히 조금씩 1990년대에 만들다가 2000년대에 친구 사이나 레즈비언 상담소나 이런 단체들이 또 큰 역할을 하다가 2010년대에는 학생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대 변날이라던가 큐브 같은 연대체가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LGBTQ 활동가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워크숍도 계속 하고 MT도 하고, 이런 진화를 설명하는 연구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인권사회학의 전망을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한 연구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자체가 굉장히 단일하게 발전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재산권과 경제권 또는 사회권 사이에 충돌이 존재하고요. 또는 서구 사회에서 좀 더 집중하는 국가 폭력의 문제와, 신자유주의 확산 속에서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지 않고 경제권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후속 세대의 어떤 갈등도 존재하고요. 코로나19 때도 계속 나왔던 공공 안전의 문제 혹은

생명권의 문제 대 사생활의 문제 또는 개인 선택의 문제, 이런 식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에 대한 연구도 존재할 수 있겠고요.

이주민, 난민 이야기를 앞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주민의 문제는 특히나 시민권 개념으로는 포착이 되지 않죠. 국민국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담론이 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서구 근대 역사에 대해 재평가하고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할 숙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군 위안부 문제 역시 50년이 지난 1990년대부터 많은 노력 속에서 그런 집단적 기억이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미국에서의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테면, 식민지 당시의 레오폴드 2세 국왕의 만행에 대해, 2020년에서야 유감을 표명하지만, 사과를 하면 법적 배상을 해야 되니까 사과는 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지만 결국 사과는 하지 않는, 그런 식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존재하고요.

끝으로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교차성 개념인데요. 이게 페미니즘 논의에서 처음 혹은 페미니즘 논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이후에 차별을 입체적으로 중층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계급, 젠더, 인종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제가 수업을 하면서 특히 놀랐던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 인종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약하다, 개념이 약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적 다양성 지표에 있어 거의 하위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경험 속에서 많이 만나보지 않은 거예요. 타민족을.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한국-센트럴리즘 같이 느껴져요. 서구중심주의의 해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인데 점점 다문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민 문제가 좀 더 부각될 것인데, 그 교차성 논의 속에서 인권 담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

먼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신윤진 선생님께서 법학에서의 인권 연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윤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권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윤진입니다.

라운드테이블 패널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고유한 인권 연구 방법이 무엇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슬라이드 제목에 물음표를 붙인 것이 여전히 그걸 찾고 있는 중인 것 같고,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연구에서의 접근방식이나 사고방식과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많이 인식이 됐는데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을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학을 보면 분야별로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분법적인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분리해서 보는 사고이고, 또 하나의 축은 공법과 사법(私法)의 이분론인 것 같습니다. 공사 이분론과 국내법-국제법 이분론 이 두 가지 축이 교차하면서 국제공법, 국제사법, 그리고 또 국내법에서도 공법과 사법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국내 공법에서 대표적인 분야는 헌법, 행정법, 형법이 있고, 이 분야별로 각각의 학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에서도 민법과 상법이 각각의 체계를 가지고 학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 특별하게 보통 ‘사회법’이라고도 분류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분야가 있습니다. 법학의 각 실정법 분야들은 그 안에서 상당히 다른 언어와 문법을 쓰고 있고, 각 세계 사이의 교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오늘, 법학에서 인권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어떻게 좌충우돌하며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각 실정법 체계 내에 고유한 도그마, 법리가 있고 또 해석에 관한 독트린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별 사안, 실제적인 사례들에 연역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학설대립 등이 많이 논의됩니다. 저는 법대에 소속되어 인권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법체계 자체와 전통적 법적 접근방식, 그리고 법 현실에 대한 좀더 비판적이고 통합적이면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정법 중심의 연역적 접근에서는 법이 있고 법이 창설한 것이 권리다, 법이 그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구성한다와 같은 사고가 바탕이 된다면, 인권 중심으로 법 자체를 다시 봄으로써 그 법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고 현재의 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법을 비판하는 기준으로서 인권이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의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지향점과 가치로서의 인권을 통해, 실정법 중심의 법학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법의 도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항상 함께 살펴보는 연구 방법을 법학 안에서 모색해보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2학기에 처음으로 인권법이라는 전공이 서울대 법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인권법을 전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인권법 전공이 만들어지고 수업이 개설될 때에도 법대 내에 다양한 시각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법을 ‘국제인권법’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았고, 인권법은 결국 기본권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 기존 법과목 체계 중 헌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현재 법대에서 인권법은 기초법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초법 안에서도 여러 접근 방식들이 있고, 인권법이 이와 또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고 하기보다는,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역사적 접근, 철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을 넓게 아우르는 공부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내 법학계의 인권 관련 논의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런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전통적인 논의들에서는, 헌법을 제일 상위법으로 하는 국내법 체계가 단일한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피라미드에서 생경한 존재인 국제인권법이라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가에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인권법도 국제조약의 하나이므로 국내법상 법률과 다름없다,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과 동일한 지위다라는 ‘법률 동위설’이 아직까지 국내 공법학계에서 통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국제인권법은 헌법과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하고, 국내법 안으로 국제인권법이 들어왔다면 헌법에 준하는 지위와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이 소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들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제대로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인권법의 또 다른 움직임은, 국제인권법이 발전하기 시작한 70년의 기간 이전에 이미 국제공법이라는 큰 세계가 오랜 기간 구축되어 왔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공법에서의 법리가 국제인권법에서의 접근과 만났을 때 서로 괴리나 충돌을 보이는 모습들이 최근에 실제 사안들로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정의 사건에서도, 과거에는 국가 간의 한일협정과 같은 일괄협정이 국제조약이며 국가 간의 계약으로서 ‘계약은 지켜져야’ 하므로 특별한 무효화 사유가 없다면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개인 인권 담론에서 인권적 접근을 통해서 그렇게 개인의 인권과 인권 침해 시 권리 구제에 관한 접근권을 그대로 박탈하고 일괄적으로 포기해버리는 식의 국가 간 계약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수설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국제법 안에서도 인권적인 문제를 두고 전통적인 국제공법의 독트린과 새로운 인권적 해석관점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공법상 국가면제 법리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가가 만약에 전시에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같은 체계화되고 광범위한 폭력을 비롯한 강행규범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런 국가면제 적용의 예외가 된다는 주장과 해석들이 이탈리아 대법원, 그리고 국내 일부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국제법 법리 자체도 톱다운 방식으로 그냥 ‘모든 국가가 적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는 개별 국가의 좀 더 인권적인 실행을 통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전통 국제 법리와의 긴장과 충돌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담론과 법과 법리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변화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도 최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중요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군인의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역사적으로 나왔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즉 공부상의 성별을 전환된 성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에 무관하게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법리 해석을 바꾼 대법원 판결이 며칠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권리를 법체계 내에서 구체적으로 보장, 구현하기 위하여 법규범과 법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의미 있게 지원해주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장애인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언급할 것은 최근에 법학계 논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과학기술과 인권’ 그리고 ‘기업과 인권’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과학기술법 분야에서의 인권이라는 것이 그간 주로 개

인정보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 자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됨이 무엇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인권적 성찰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ESG라는 담론이 유행을 하면서 또 하나의 기업 경영 전략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반면, 기업이 인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책임을 묻고 어떻게 그 의무와 책임의 법리를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중 누가 더 우위에 있냐를 따지는 다툼에서 벗어나,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공통된 목적을 가진 지구적 인권규범체계에서 공존하는 두 축으로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들 규범 간의 의견이, 예를 들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안에서의 의견이 최근까지 달랐는데, 의견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우위다 아니 그 반대다 그런 식의 위계적인 다툼이 아니라, 각 인권해석기관들이 긴밀하게 규범적인 상호 연계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해석이 더 나은 인권 해석인지를 설명하고 논쟁하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구성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그러한 발전적 관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특히 국내 공법 영역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사실상 동일어처럼 사용되어 왔는데,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법의 강제를 받지만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비시민 인권 주체들이 입법과정에서 참정권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특히 헌법재판을 통해 기본권 주체성을 국제인권에서의 보편적 인권 주체성과 연결시킴으로써 헌법심사의 주체로 참여하고,

인권 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국내법을 바꿔 나가는 데 오히려 비시민으로서 굉장히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내법이 변경된다면, 입법 형성 과정, 규범 형성 과정에 국민이 아닌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재판이 조금 더 포용적이고 초국가적인 인권의 관점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소송의 적격요건과 심사 기준을 적극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인권연구 학술지에 실린 최근 논문에서는, 기존 국제공법과 국제인권법 사이의 법리의 충돌에 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기존의 국제공법에서는 국가의 ‘관할권’이라는 것은 결국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미국 영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토적 관할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침해 행위를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하는 부당한 시도들을 정당화하게 되는 논리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국경적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은 기존의 국제법의 전통적인 관할권 개념을 벗어나 국가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권 의무와 책임을 지며 보편적 국제인권 협력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에서의 새로운 관할 이론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시작만 하고 제대로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기존에 유럽인권재판소가 한 사회의 도덕, 문화나 종교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인권 사안에 있어서는 그 당사국 정부에게, 특수성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더 많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내에 문화, 종교적 소수자가 있는 경우, 해석 재량이 광범위하게 정부에게 부여된다면 더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특수성과 보편성

의 차원에서 어떻게 초국가적인 지역 인권재판소가 진정한 소수자 개인의 평등한 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간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합의에 반하므로 동성 커플의 결혼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인권 사안에서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가, 특히 소수자성 자체가 차별의 원인이 되고 그 사회적 합의 자체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그러해서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판단기준일 수 있는지 국내외 판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두 개의 중요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인, 동성커플의 헌법상 혼인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Obergefell v. Hodges, 2015)과, 오래 전부터 확립된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기본권성을 부정한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인권 해석 및 새로운 인권을 도출하는 헌법 해석의 태도, 민주주의와 사법심사의 관계, 소수자 인권 사안에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해 함께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감사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면서 패널 선생님들께 첫 번째 발표로 부탁드렸던 것은 각기 다른 학문 영역에서 어떻게 인권에 대해 접근하며 연구하는지, 각각 세부 전공도 있으니까 그 세부 전공 안에서는 어떻게 인권에 접근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지금의 주요한 사회적 현상이나 의제로서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연구나 실천이 필요한지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 각 학문 토대 속에서 혹은 개인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발표

의 역순으로 신윤진 선생님께 먼저 토론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윤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는 국가주권, 그리고 인권의 초국가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권 자체가 한 국가의 국경, 영토나 주권 영역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인권 현상 자체의 초국가성이, 기존의 국내법, 국제법, 공법, 사법 체계 내에서 포섭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규범 체계 간의 연결적인 작동을 어떻게 더 초국경적으로, 초영역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감염병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초국가적 인권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방식과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제인권규범도 절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도 기존의 주권국가의 동의와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국제공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규범 자체가 가지는 국가중심주의도 장차 극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가 자국 영토 안에서만 인권 의무의 주체로서 사고되었던 것에서 확장하여, 이제 그 인권 의무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야 하고, 보다 다차원적인 초국경적인 법적 의무와 책임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론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주권국가 행위자가 아닌,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국제기구, 개인과 같은 비국가 초국가 행위자들도, 이제는 주권국가의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받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권 의무의 주체, 인권 의무의 담지자로서 국제인권법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식의 규범 발전이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과거 국가주권의 객체나 대상으로서의 개인에서 이제 인권의 주체로 부상하기는 했지만, 실효적으로 그 인권 주체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가는 국제인권규

법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 자체의 국가 중심성에 대한 극복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단위 국가 안에서의 헌법 체계 내에서는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국경만 넘어서면 그것이 희미해지고 또 그것에 대한 많은 불일치와 위기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권국가 내에서 보장되어온 기본 가치들이 이제 어떻게 지구적으로 확장될 수 있느냐, 헌법적 가치들의 지구적 확장을 제도적으로 고민하는, 세계입헌주의(world/global constitutionalism) 논의가 최근 국제 학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헌법 가치의 지구화 역시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벤하비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의 객체가 아닌 법의 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적 가치는 헌법적 가치의 지구화를 이끌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체계의 좀 더 미래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체는 단지 주권국가가 아닌 개인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간의 인권법의 발전이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 인간 안에서의 도덕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초점과 노력이 맞춰져 왔다면, 그러한 보편성이 인간 아닌 존재들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학계 내에서도 동물권과 자연권, 지구법학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 비인간 주체뿐만 아니라 AI로봇과 같은 비생명 존재들의 법적인 지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시대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인간존엄의 근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도 중대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영

신윤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 패널 선생님들의 발표에서 공통

적으로 중요하게 꼽으신 어떤 현상이나 의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인권은 국가주권을 확장하는 개념 혹은 그걸 넘어서는 개념으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한 정치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난민이나 이주민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 그것이 어떻게 인권 담론 속에서 접근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도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윤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비생명 주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기는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찬석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찬석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근데 문제는 제가 솔루션이 없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정체성의 정치와 인권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의 주제인데요. ‘인간은 다 중요하다’, ‘인간은 다 귀하다’, ‘인간은 다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주장이 평면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중층적인 불평등을 소거해버리고 ‘우리는 다 똑같은 개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반대 운동에서 나온 개념이 컬러 블라인드 레이스즘color-blind racism인데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개인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흑인들이 가진 고유한 차별의 구조를 간과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흐름인데요. 이게 젠더 정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계적인 공정의 관념을 적용하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아’라고 하지만, 현실에서의 복잡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는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구요. 이런 교차성의 시각으로 이런 불평등 레짐regime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어느 하나의 축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른 여러 축들에서 사실 소수자인 사람들이

‘나는 다수자야’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상할 때 제가 수업할 때에도 학생 중에 백인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인종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전에는 진보적이었던 학생들도 이제 백인 남성들과 함께, 트럼프 지지에 편승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백인 여성의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계급적 측면이나 다른 측면, 세대별로 세대적 측면에서 자원이 많지 않은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들과 적대하면서 다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권 담론이 정말 더 잠재력을 발휘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종 연구, 계급 연구, 젠더 연구의 다양한 이론적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나아가 여러 소수자들이 연대하는 정치의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운동의 논의와 인권의 논의가 앞으로 더 접목이 될 경우 인권사회학이라는 세부 분야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학의 현재 주류 분야가 계급, 젠더, 인종 연구이거든요. 그러한 연구의 많은 (이론적, 방법론적)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인권사회학이 함께 시너지를 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중층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나타나는데, 각각을 파편화되고 분절된 방식으로 바라보고 각 영역의 행위자들이 서로 경합하고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사회학의 인종 연구 계급 연구, 젠더 연구의 이론적 자산들을 흡수하면서 인권 연구가 더 발전해

나가면 이 소수자들 간의 연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현재 선생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저는, 서찬석 선생님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서찬석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지적을 하나 해 주셨는데, 소수자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신이 마치 다수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구조가 보수화를 만든다, 이것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반대의 현상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페미니즘 시각으로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성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이 과잉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연대, 교차성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인권담론은 교차성, 관계성, 비인간 관계까지도 포괄하면서 확장되는 반면, 대중들의 인권인식은 여전히 좁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권리는 그냥 나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서만 이해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피해자로 정하면서 피해자 경쟁이 생기는 것 같구요 가령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챙겨야 된다, 그걸 위해 노동운동해야 되고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학생은 나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으면서 열광하더라고요. 그때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렇게 좁게 인권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배경이 뭘까를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은 연구가 있는데 배경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상한 공정 담론을 만들어내는 능력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좀 파고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능력주의가 우리의 시각을 협소화시켰는가 우리의 권리에 대한 관점을 협소화시켰는가 라는 부분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권 담론과 관련해서 또 하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종교적인 맥락 같아요. 우리 사회의 종교가 왜 인권과 대립하게 되었나 이 질문에 대한 연구가 비어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저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매체가 우리의 권리 감각을 협소화시키는가, 사실은 권리 담론은 비인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중담론에서는 권리를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트위터가 그게 몇 자죠, 트위터의 최대 글자 수(280자)가 있는데, 딱 그 글자 수만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매체의 영향이 사실 인권 담론을 교차적으로 그리고 복잡하게 나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교육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 그렇게 짧은 호흡이 아닌 어떤 방법들로 소통해야 하나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짧은 순간에도 교차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를 정말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술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체학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관련된 담론, 페미니즘과 관련된 담론이 왜 잘 수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거기 안에 깃들여 있는 엄숙함이 그게 우리 청년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게 되게 사소한 듯하지만 중요한 질문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약자, 기후위기, 너무 심각해요.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기본적인 정서는 조롱과 해학이거든요. 욕하는 거 아니면 조롱하거나 아니면 재밌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권운동의 분위기는 너무 엄숙해요. 엄숙함이 주는 압박, 사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요즘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디

지털 매체에서 연결을 만들어줬을 때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는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페미니즘 리부트는 미러링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봐요. 미러링은 되게 재밌거든요. 저처럼 엄숙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인권 담론의 확산에도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방법이 될까, 이렇게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인간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예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내가 지금 동물까지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재미나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란 질문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주영

인권에 대한 이론은 교차성, 인간과 비인간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가는데 대중 담론으로서의 인권은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이현재 선생님께서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진성 선생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진성

앞으로 인권사 연구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폭력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가 개인이라는 문제인데요. 인권이라는 담론이 처음 폭발했던 계기가 프랑스 혁명기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었잖아요.

왜 굳이 인간과 시민이라는 말을 썼나 보면 사실상 인간 모두가 아니라 소위 시민만을 인간으로 쳐 준 거고. 그래서 3년 후 올랭프 드 구즈라는 여성이 여성의 권리 선언을 했을 때 ‘어디 여자가 감히’ 하는 차원에서 단두대로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란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상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들의 생각의 지평 속에 여성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인권 선언서를 쓰는 데 도움을 줬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도 미국독립선언서까지 썼던 사람인데 그 자신은 노예 소유주였잖아요. 그럼 그는 과연 위선자였을까요? 아마도 제퍼슨 스스로는 아무런 논리적 문제도 없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평에 있지 않으니까요. 서구에서 처음 나왔던 인권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모든 인간의 권리가 아니었고 또 그래서 사실상 인권보다는 요즘 말하는 인도주의에 가까운 개념이었지요. 인도주의는 특히 영국이 식민통치하면서 많이 활용한 이념적 도구인데, 인권과 인도주의를 저는 구별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19세기만 해도 별로 구별이 없이 쓰였지요. 그런데 인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컴패션compassion, 즉 인간에 대한 공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의 영역 그 바깥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공포 정치를 행했던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에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들의 아픔에 너무 공감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목된 혁명의 적들에 대해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했던 거고요. 이처럼 인권과 인도주의가 사실은 오히려 폭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면 인권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역사학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폭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세계평화’를 외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는 사실상 폭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요. 오히려 한 시대에 피를 많이 쏟고 나면 그 다음 시대에는 찬란한 문화가 꽃피웠던 것이 사실이구요. 성인군자가 많은 시대 다음에는 예외 없이 파국의 시대가 찾아오죠. 따라서 폭력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철학자 메를로 폰티가 비폭력주의는 자유주의의 사

법적 환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학문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당시에 그 상상력의 지평이 제한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의 주권 개념과 시민권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관련하여 이런 질문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동물의 권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라는 질문 말이죠. 특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모두의 권리라는 생각이 그나마 가능해진 것은 1945년 이후이고 인간의 존엄성 논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부터 본격화된 것인데요. 물론 인권을 동물권으로 확장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인권이 곧바로 동물권이 되어 버려야 하는 건가, 인권이 생물학적인 권리와 등치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인간 모두의 권리, 사회적 배경을 아예 괄호쳐 버리고 그냥 개개인의 권리만을 중시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관념은 사실상 서구의 발명품이고 국민국가의 기본 원리와 개인이라는 원리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민국가는 잘난 개인들이 하나의 주권적 체제를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잘난 개인이라고 하는 관념이 부정된다면 사실상 국민국가가 존립할 근거가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난 개인이 아니라, 그냥 취약한 개인, 항상 언제든지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소수자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국민국가 체제 내에 고정된 생각의 지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권과 동물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취약성 같은 문제들에 대해 그냥 규범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적이거나 아니면 인간학적, 철학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재

사실은 서구 철학자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버틀러도 그렇고 해러웨이도 그렇고 기본적인 시작이 계몽주의랑 달리 인간이 독립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 통일성을 갖는다가 아니라 인간은 취약하고 항상 타자 연관적이고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화두는 이미 던져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취약한 사람들끼리 뭘 해야 되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될 것인가,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말 걸어오는 고통에 대해 계속 그것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권리가 대중 담론에서는 너무 협소하게 사용되어서, 이런 관점을 과연 인권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고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주영

여기 청중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송자우

잘 들었습니다. 짧은 코멘트와 짧은 질문 하나씩 있는데요. 이 운동이 너무 엄숙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기후위기 같은 정말 엄숙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국제적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게 바로 청년층과 청소년층인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무거우면 그냥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생각을 가졌구요. 또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이 높았고 특히 치열했던 접전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구요. 신윤진 선생님이 미 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⁵⁾하고 오버거펠 판

⁵⁾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미 연방대법원의 2022

결)을 비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판결로 수십 년 된 법리를 뒤집었고 다수 측 대법관 가운데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심지어 오버저펠 판결도 언급하면서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선전포고처럼 얘기를 하니 그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을 이끈 게, 바로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하는 흐름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의 젊은 층, 청년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상황이 충분히 나빠지면 엄숙하게 반응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 질문은 선생님들 발표하실 때 보면, 가령 린 헌트는 전 선생님, 서 선생님 발표에 동시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소수자성이나 차별금지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 교차성 등등 학제 간에 공유되는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말하자면 현대 대학의 분과체계 내에서 각자 계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학제 간 연구를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소통 대화를 하거나 시도를 하셨다면,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김혜정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성수동에 있는 헤이 그라운드라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 건물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인권 담론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많이 재생산

년 판결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의 헌법상 권리성을 부정하였다. 이로써,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던, 기존의 *Roe v. Wade* 판결(1973)과 후속 판결인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1992)을 폐기하였다.

6) *Obergefell v. Hodges*. 미 연방대법원의 2015년 판결로, 동성커플이든 이성커플이든 동등하게 결혼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되고 있는 곳이 성수동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발과 인권, 기업과 인권을 공부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임팩트, 인권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약간의 컨설팅도 하는 경험을 1년 반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점은 20~30대 소위 MZ 세대들은, 인권 활동가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빨간 띠를 두르고 하는 투쟁이라는 것에 대한 지겨움, 해결되는 것이 없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한 담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신들의 언어로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자유롭고 가볍게 접근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보면서 회복해 나가는 문화를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희망이 보이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 깊이 보면 그 안에서도 환경, 인권, 또 기업, 스타트업, 테크 다 분리가 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보였고, 환경과 인권분야간의 교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임팩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가치가 기업에 뿌리내려 있는지를 물었을 때는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많았고, 인권 담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 공정성 담론 이외에는 이해의 폭이 매우 좁았어요. 우리가 환경, 인권,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내 인권은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내 인권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현재 교수님께서 돌봄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돌봄 정치로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방식대로 시민단체를 만들고 참여하고 모이고 투쟁하고 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돌봄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언론에서 젊은 세대를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인권 이슈를 조명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인권전문가의 목소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좀 더 활발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발제를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한국인권학회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은 그런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인권학회 만들 때 작명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이 단체가 인권학을 하는 회나, 인권을 공부하는 학회나. 절충안으로 한국 인권학회하면 둘 다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인권학을 하는 학회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통합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까 권리라고 하는 말이 맞나, 번역이 제대로 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요. Right라는 말 자체가 옳다, 의롭다라는 Rectitude라는 의미하고,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는 Entitlement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권리가 잘못 번역된 것 같다, 이를테면, 중국에서는 권세 권, 이로울 리자, 권리라는 말을 상당히 어둡고 칙칙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옳다, 의롭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의’로 쓰고, 권한의 ‘권’자를 붙여서 인간 의권(義權)으로 합시다, 용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제안했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청중 웃음) 어쨌든 그 두 가지 의미가 원래 들어가 있었던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근본적으로 저는 권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일종의 기명의manifest 차원이 있고, 익명의latent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쟁의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갈등하고 모순도 이루고 이런 관계 속에서 커진 담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인권이 기본적으로 맺집이 좋은 권투 선수 같아요. 맞으면 맞을수록 커지는, 굉장히 비판

을 받으면서 확장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기명의 차원에서 나타났던, 그런 권리는 톱-다운식으로 완벽한 어떤 이상 같은 걸로 선포해 두고 그것에 따라 현실을 맞춰 가려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기명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인권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목적론적 역사관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사회구성주의적으로 ‘발명’된 건데 거기에 너무 객관성을 부여해버렸다, 지적 허구다, 규범적으로만 규정이 됐다, 왜 어떤 집단을 제외하면서 보편인권이라고 했느냐, 등등의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권을 기명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말보다는 억압 권력의 보편성이라는 식으로 뒤집어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차원에서 억압 권력은 항상 작동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계기적으로,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억압 권력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지요. 그런 억압 권력을 거부하기 위해 저항적으로 나타났던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국가의 억압, 백인종의 억압, 유산계급의 억압, 남성의 억압, 신자유주의의 억압, 주류의 억압, 이성애의 억압, 등등이 있어 왔습니다. 또는 이른바 AIM이라고 하는 Accidents사건, Incidents사고, Mavericks‘또라이’ 이런 돌발적인 억압 권력도 나타났지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억압 권력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 역시 여러 차원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중 국제적으로 널리 제도화된 대표적인 보호형태가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입장론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돌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소수자들의 연대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요. 이러한 보편적인 억압 권력에 대항하여 나타난 다양한 저항형태들 중 가장 체계적이고 법규범적으로 확립된 하나의 저항이 인권이라고 이해한다면 인권의 기원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모순점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혜

저는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석사를 졸업했고 현재는 직장인인데요. 네 분의 발제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일단 가장 많이 하게 된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인권이라는 주제로 얘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인권이 당위적으로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권리를 좁게 인식하게 하는 배경일 수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 인권 담론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인권 담론을 서로 소통하면서 정제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나 통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없다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조롱과 재미가 온라인상에서 거의 주류 문화처럼 되고 있는 시점에 인권에 대해 재미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대항담론을 확실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잉대표되고 있는 남성의 피해자성이라는 것을 그것이 왜 피해자성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이야기 되지 않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떤 식으로 언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대항 담론에 조금 더 힘이 실릴까 이런 고민을 좀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시민이나 인권의 개념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시민의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상기할 때 시민이란 개념을 더 확장시켜서 모두의 개념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아닌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과거에는 모두의 권리라기보다는 백인, 자산 계층의 남성 이런 식으로 한정되다가 나중에 더 확장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날 여전히 시민이라는 개념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쓰려고 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 시민을 모두의 용어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물론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전진성 선생님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주영

네, 청중으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많이 자극하는 여러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패널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응답과 마무리 발언을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이 다양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억압 권력에 대한 대항 담론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항 담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뭔가 가벼워야 하는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사례들을 보면 진지하게 더 구체적으로 대항담론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행위자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문 간의 대화 소통이 있어야지만 인권에 대한 연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돌봄 정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냐는 질문, 그리고 방금 전에는 시민 개념을 넘어서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민 개념의 확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패널 선생님들께는 시간 제약상 선별해서 간단히 답변하시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진성

마지막 질문 던지신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한계를 언젠가는 넘어서는 게 맞지요. 특히 요새 이주민, 난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종래의 시민권을 넘어서실 필요성이 대두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에서 작중 화

자의 말을 빌려 인류 전체를 사랑할수록, 인간 개개인에 대한 증오심은 높아만 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를 사랑하는 건 아무도 안 사랑하는 거라는 말이죠, 정체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라는 의식과 연관되는데 우리라는 게 있으면 항상 또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권이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라 할 수 있지요. 저도 구체적인 해법은 모르겠고 그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자는 거고요.

그리고 조효제 선생님께서 억압의 보편성 얘기하신 것에 대해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저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취약함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행복은 누구나 다 가치가 다르지만 불행은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건 무조건 불행한 거지 상대적 관점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불행에 있어서만큼은 전 인류는 공통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은 서로 다양할 수 있고 역시 뻘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 상상력인데, 린 헌트가 자기 책에서 왜 여성의 권리가 노예의 권리보다 더 늦게 쟁취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 대단히 시사적이예요. 가장 큰 이유는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노예의 고통은 우리가 조금만 전해 들어도 그 억압에 대해 상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여성은, 예를 들면, 우리 엄마와 누나가 엄청 억압받고 있다는 게 별로 상상이 안 되거든요. 맨날 집에서 보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내재화된 억압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해방이 늦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인권은 딱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어느 지평까지를 상상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재

사실 위기는 굉장히 엄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론 작업은 당연히 엄숙하고 정밀하고 정교하게 가야겠죠. 근데 위기에 대한 대응이 힘을 받는 거는 대중 운동이 함께

할 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아까 말한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상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반감이 많이 드는가라고 했을 때, 약간 가벼워지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그 가벼움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한다고 하면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하던 어떤 길을 거의 다 포기하고 헌신하거나 여기에 완전히 매진해서 뛰어드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물론 실제 인권에 대해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실은 무겁고요. 그러면 힘들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고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또 이상적으로 꿈꿨던 사람, 일상 속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돌봄이든 뭐든 함께 한번 연결해 보는 경험, 이를 통해 즐거워지는 경험이 있으면 사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거든요.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연결해 나가다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한 발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제가 가벼움이라고 표현한 것이구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말씀 드린 겁니다. 물론 조롱, 그런 정서를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권을 할 때 너무 총체적으로 확 바뀌야 된다는 어떤 무거움을 버리자라는 거고요. 즐겁고 가벼운 연결 속에서 함께 있는 경험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돌봄은 딱 게 아니라 응답 얘기랑 연결이 돼요. 돌본다는 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취약하니까 서로 좀 돌보고, 다짜고짜 내가 너한테 뭘 해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네가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듣는 데서 돌봄을 시작하자는 거죠. 돌봄은 사실은 듣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고 네가 보내는 신호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네가 나한테 말 걸어온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를 궁리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이 돌봄은 사실 일상 안에서 하나의 연결 가닥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짝이라도 연결되어 보는 경험이 있다면 일상의 문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서찬석

제가 인권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한 저의 첫 번째 노력이고요. 앞으로 이런 플랫폼 내에서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숙제로서 받아들입니다. 돌봄 정치나 이런 소수자 정치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 억압 권력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99%에 대해서는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취약한 존재이고,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Occupy Wall Street 운동의 구호도 ‘우리는 나인티 나인 퍼센트’였는데 미국에서도 항상 백인 흑인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친하게 지낸 마트 노동자가 있어요. 백인 여성인데,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치매 노인을 돌본 후에 5시부터 10시까지 마트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애가 셋이 있어요. 밤에 집에 와서는 20분 동안 맥주 마시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 과연 ‘당신은 백인이니까 그냥 혜택받은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흑인들이 겪는 그런 특수한 억압을 받지는 않지만, 계급적 위치에서 받는 특수한 억압들이 있어서 여전히 어느 정도는 공감대, 서로에 대한 어떤 연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소수자들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나이브할지 모르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윤진

사실 Rights, 권리라는 것이 일본에서 처음에 번역될 때 ‘리’ 자를 이치 리(理)자를 쓰다가 점차 이익할 때 리(利)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옳은 이치를 연구하는 것에서 요즈음 이기적

인 논리의 수단적 언어로서 인식되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인권법 수업 내에서도라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간 제가 전통적인 법학과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였었는데요. 이제 법학계 내에서뿐 아니라 오늘 한국인권학회에서와 같이 다양한 포럼에서 다른 연구 분야의 많은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공부를 넓혀가고 함께 인권의 언어 자체를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다시 법학의 언어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 언어가 연결되고 더 큰 공통된 언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함께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

네 분 패널 선생님들, 또 참여해 주신 여러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인권에 대해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에 대한 학문적 접근, 인권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